

1. 개정이유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수도법」이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됨에 따라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측정·기록을 위해 측정 항목 및 분석방법과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절차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된 법률 조문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 및 수질 측정·기록 방법(안 제11조, 별표 5의2, 별지 제3호의2서식)

- 강우시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측정·기록하여 보존하도록 의무화에 따라 강우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 항목 및 분석방법 등을 별표 5의2와 같이 정하고, 측정결과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하도록 함

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절차 마련(안 제13조의8,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관리대행업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마련

다.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절차 마련(안 제14조의7,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4호의8서식)

- 기술진단전문기관을 등록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의 양도, 다른 법인과의 합병 등으로 상속인, 영업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 신설

라. 배수설비 신고자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22조의2)

- 배수설비 설치신고자가 일정 기준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하는 규제 완화에 따라 증가한 하수의 수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 대상을 규정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의 기준 명확화(안 별표 5의3(종전 별표 5의2), 별표 5의4(종전 별표 5의3), 별표 10, 별표 15)

- 가중처분의 횟수 산정시 기간 산정기준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가중된 처분기준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

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안 별지 제31호서식)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는 신청인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가능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 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내용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반영

사. 하위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

- 「하수도법」 개정(법률 제17852호, 2021.1.5. 공포, 2022.1.6. 시행)

에 따라 시행규칙에 인용된 법률 조문 등 정비(안 제23조제1항)

- 인용된 타 법령의 조문 및 알기 쉽게 자구 등 정비(안 제13조의7,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제23조, 제77조, 별표 제5의4 제2호사목, 별지 제4호의7서식, 별지 제4호의9서식, 별지 제31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3조의7 중 “별표 5의2와”를 “별표 5의3과”로 한다.

제13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8(관리대행업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의3제1항 중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 제4호의7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의7서식”을 “별지 제4호의8서식”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4조의4제2항 중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 제4호의7서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4조의5 중 “별표5의3과”를 “별표 5의4와”로 한다.

제14조의6 중 “별지 제4호의8서식”을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한다.

제14조의7 및 제2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의2(배수설비 변경신고 기준)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질염화비닐”을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를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한다.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로 하고, 별표 5
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3(중전의 별표 5의2), 별표 5의4(중전의 별표 5의3), 별표 10 및
별표 15 중 제1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
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
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의3(중전의 별표 5의2), 별표 5의4(중전의 별표 5의3), 별표 10 및
별표 15 중 제1호다목을 각각 같은 호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
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
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별표 5의4(중전의 별표 5의3) 제2호 위반행위 사목의 행정처분기준의 1

차 위반란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앞쪽 신고인란 중 “「하수도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또는 제13조의4제2항”을 “「하수도법」 제19조의2, 제19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2항, 제13조의4제2항 또는 제13조의8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4호의7서식 및 별지 제4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 제4호의7서식, 별지 제4호의8서식 및 별지 제4호의9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8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7서식) 앞쪽 중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을 “「하수도법」 제20조의2제2항,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7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뒤쪽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8 및 제14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5의2]

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방법(제11조 관련)

1. 측정 지점: 1일 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영중인 하수 처리구역에서 강우로 인하여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우수 토실(강우시에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장에 수송하고 나머지 하수는 하천 등의 수역으로 방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을 측정지점으로 한다. 이 경우 하수처리구역별로 강우유출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1개소 이상 선정하여 수량과 수질을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 시기 및 기간
 - 가. 측정지점에 대해 연 2회 이상 측정한다.
 - 나. 강우 시작 시점부터 강우 종료 후 하수가 우수토실에서 배출되지 않는 시점까지를 측정기간으로 한다.
3. 측정 항목: 수량, 수질(BOD, TOC)
4. 측정 및 분석 방법
 - 가. 수량은 공인기관의 검교정을 받은 유량계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 나. 수질의 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고, 측정지점의 수량 및 수질 변동상황을 고려하여 채수간격을 설정한다.
5. 측정자료의 기록·관리 방법: 측정결과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하수도법」 제68조의2에 따른 하수도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강우시 월류하수 측정·기록 관리카드

측정 지점	관리번호				처리구역(분구)		()		
	인근주소				토실좌표		X : , Y :		
측정 지점 시설 현황	구 분		☐ 합류식 ☐ 분류식		방류관로 규격				
	측정지점 배수구역면적				측정지역 하수처리인구		인		
	스크린설치여부		☐ 설치 ☐ 미설치		위어 규격		높이: m / 길이: m		
강우 사상	강우기간		시작	년 월 일 시 분		선행건기(hr)		hr	
			종료	년 월 일 시 분					
	강우정보		☐ 강우량계 ☐ 기상청		누적강우량(mm)		mm		
	지속시간(hr)				강우강도(mm/hr)		mm/hr		
측정 정보	수량	측정 기간	시작	년 월 일 시 분		측정간격		분	
			종료	년 월 일 시 분					
		측정 기기	설치위치						
			유량계 종류(모델명)						
	수질	채수 기간	시작	년 월 일 시 분		채수횟수			
			종료	년 월 일 시 분					
	측정지점 위치도(우수토실 유역 및 평면도)					측정지점 전경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차수	1	2	3	...	...	...	누계(평균)	
	시료채취 일시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월 일 시 분	-	
	수량 (m³)							()	
	BOD (mg/L)							()	
	TOC (mg/L)							()	
	오염 부하량 (kg)							()	

기 록 일 :

기록담당자 :

(인)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위승계 신고사항	승계한 영업의 상호(명칭)	승계한 영업의 등록번호		
	승계한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한 실험실 소재지 (전화번호:)			
	지위승계 사유			
	지위승계 일자			

「하수도법」 제19조의6,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8제1항 또는 제14조의7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대행업자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상속의 경우: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등록증 각 1부.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등록증 각 1부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해당 등록증 각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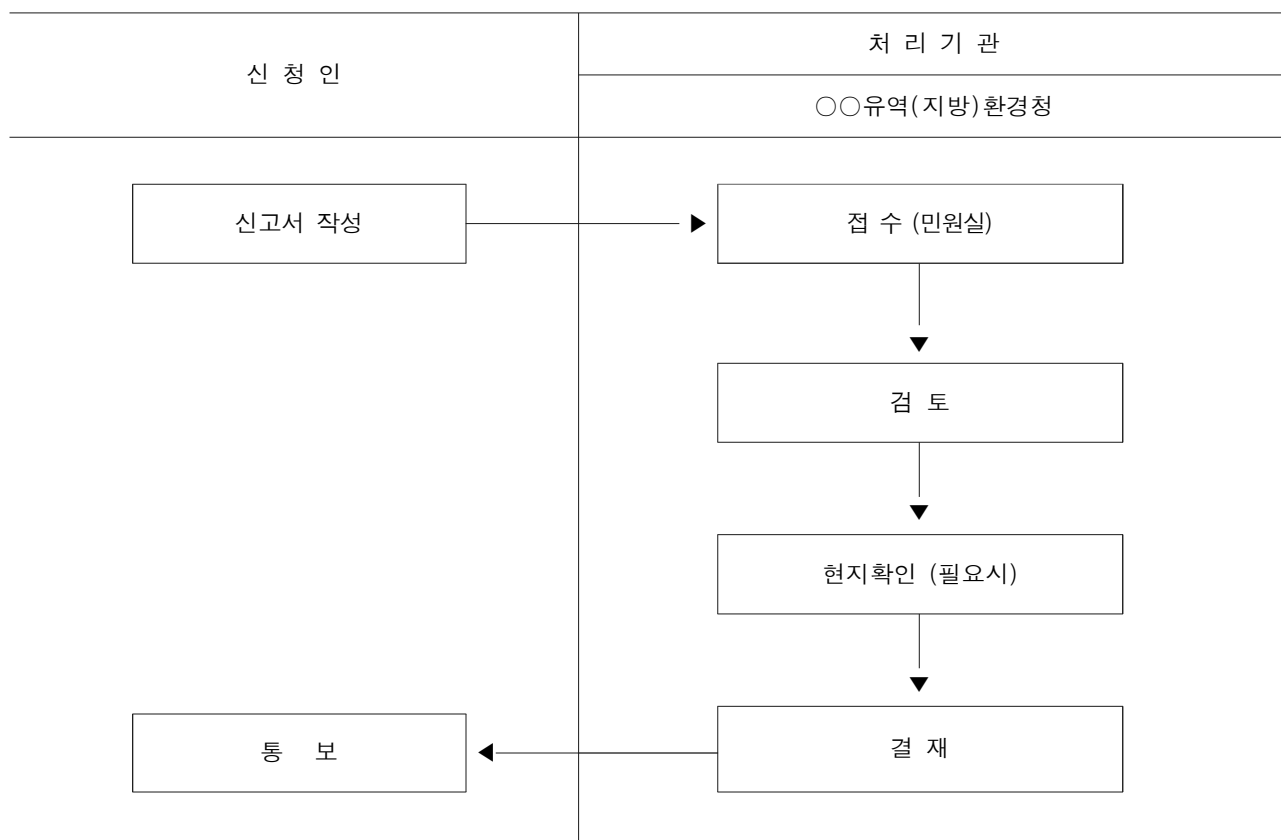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u>별표 5의2와 같다.</u> <u><신 설></u>	<u>제11조(강우로 인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지 않고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기록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5의2와 같다.</u> 제13조의7(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 ----- -- <u>별표 5의3과</u> --. <u>제13조의8(관리대행업 지위승계신고)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 6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리대행업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u>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법 제20조의2제2	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14조의3(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신청) ① -----

현행	개정안
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u>별지 제4호의6서식</u>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서에 영 별표 1의3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에게 <u>별지 제4호의7서식</u>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u>발급하여야</u> 한다.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① (생략) ②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u>별지 제4호의6서식</u>의 기술진단전문기관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	----- ----- <u>별지 제4호의7서식</u>----- ----- ----- ----- ----- <u>제출해야</u> -----. ② ----- ----- <u>별지 제4호의8서식</u>----- -- <u>발급해야</u> ----. 제14조의4(기술진단전문기관의 변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별지 제4호의7서식</u>----- ----- ----- ----- ----- -----

현행	개정안
서의 장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u>별표5의3</u>과 같다. 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영 별표 1의4 제4호에 따른 기술진단 실적보고서는 <u>별지 제4호의8서식</u>에 따른다. <u><신 설></u>	----- <u>제출해야</u> -----. 제14조의5(기술진단전문기관의 행정처분기준) ----- ----- <u>별표 5의4</u>와 ---. 제14조의6(기술진단전문기관의 기술진단 실적보고) ----- ----- <u>별지 제4호의9서식</u>-----. <u>제14조의7(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6서식의 기술진단전문기관 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사무실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u>

현행	개정안
<신설>	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청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증에 변경 사항을 적고 이를 내주어야 한다. 제22조의2(배수설비 변경신고 기준)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현행	개정안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u>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u>아니할</u> 수 있다. 2. 배수설비는 철근콘크리트, <u>결질염화비닐</u>, 도기, 그 밖에 내구성과 내부식성(耐腐蝕性)이 있는 자재를 사용하고 수밀구조(水密構造)로 할 것 3. 4. (생략)	<u>란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하수의 수량이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u> 제23조(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 ① <u>법 제27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 ----- -----. ----- ----- ----- ----- ----- ----- ----- <u>않을</u> -----. 2. ----- <u>결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u>----- ----- ----- ----- 3.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배수설비는 제1항의 기준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u>설치하여야</u> 한다. ③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하여야</u> 한다. 1.·2. (생략) ④ (생략) 제77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u>하여야</u> 한다. 1. 제13조의7 및 <u>별표 5의2</u>에 따	② ----- ----- <u>설치</u> <u>해야</u> ----. ③ ----- ----- ----- ----- ----- ----- ----- ----- ----- ----- --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 ----- -----<u>해야</u> ----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7조(규제의 재검토) ----- ----- ----- ----- ----- ----- ----- ----- ----- ----- ----- <u>해야</u> ----. 1. ----- <u>별표 5의3</u>-----

현행	개정안
른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행정 처분의 세부기준: 2017년 1월 1일 2. ~ 5. (생략)	----- ----- -- 2. ~ 5. (현행과 같음)